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40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10. 6.	회부연월일	2022.10. 6.

1. 제안이유

- 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의 책무(안 제2조)
-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관련 내용 추가(안 제8조제1항, 제10조)
- 통리·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(안 제8조제2항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개정안은 「주민투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「주민투표법」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		
의안번호	제141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10. 6.	회부연월일	2022.10. 6.

1. 제안이유

-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,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, 지도 감독(안 제3조~제5조)
-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유시설 사용, 포상, 준용(안 제6조~제8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 및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		
의안번호	제142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10. 6.	회부연월일	2022.10. 6.

1. 제안이유

- 마을자치회 운영 4년 차를 맞고 있으나 불필요한 협의체라는 인식이 강하여 주민혼선초래 및 형식적인 운영체제와 관행적인 마을사업 추진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와 기여도가 낮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폐지안은 운영 4년차를 맞이하는 마을자치회가 주민혼선초래 및 형식적인 운영체제와 관행적인 마을사업 추진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와 기여도가 낮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제2항에 따른 조례 폐지는 관계 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,
-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천 모델인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43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10. 6.	회부연월일	2022.10. 6.

1. 제안이유

- 2010년 이후 「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(재)논산시 장학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민법」 뿐 아니라 상위법인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률을 명시함.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)
- 장학회의 사무를 시 업무와 분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.(안 제3조, 제9조)
- 장학회의 수행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.(안 제5조)
-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관리, 운영규정 등 조항을 신설함.(안 제11조, 제12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개정안은 현재의 (재)논산시 장학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